유럽 공동체 특허 제정 제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 공동체는 2000년 7월 5일, 유럽 연맹을 통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단일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을 발명가에게 주기 위하여 공동체 특허 (community patent)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산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줄이고 또한 특허 비용을 더 저렴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분쟁의 경우 분명한 법적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리스본과 페이라 유럽 이사회는 (유럽) 공동체 특허의 제정을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고 그리하여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 기반의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럽의 노력 중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용하였다.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체 특허가 2001년 말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프리츠 볼케스타인 유럽 내 시장 위원회의 회장 (Internal Market Commissioner)은 "공동체 특허의 제정은 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유럽의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연구 및 기술적 과학적 혁신이 산업 및 상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에 종종 유럽은 연구를 제공해왔으나,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은 다른 국가들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명성은 혁신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대한 명성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단일 특허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면서 특허 비용을 격감시킬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 특허는 신경제 시대에 유럽 산업계에 중요한 경쟁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현재로서, 유럽에서의 특허는 각 국가별로 혹은 소위 유럽특허를 허여하는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 (EPO)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국내 특허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1973년 국가간 유럽 특허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EPO는 단일 출원 및 허여 절차를 제공하고 또한 출원자들이 일련의 국내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의 영역에서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공식 언어로 유럽 특허를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국내 법원이다. 그리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다른 절차 규칙으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원칙적으로 15개의 다른 법적 소송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번역 비용으로 인하여 현재로는 유럽에서 발명 특허를 내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를 내는 것보다 상당히 더 비싸다. 분쟁의 경우 다양하게 서로 다른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잠재적인 불편함이 부가되었을 때, 현재의 제도는 연구, 개발 및 혁신에 상당한 장애이다.

이사회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새로운 제안 하에서, 공동체 특허는 유럽 특허청에 의해서 부여될 것이다. 발명가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특허 보호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및 유럽 특허는 공동체 특허 제도와 공존할 것이다.

이번의 제안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법적 확실성이 있는 공동체 특허를 제공할 것이다.

▶ 비용 감당 (affordability)

제안의 주요 목적은 유럽에서의 특허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유럽에서의 특허 비용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EU, 미국 및 일본에서 특허를 얻는데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의 비교 (단위 : 유로)

	출원료 및 조사료	심사료	등록료	갱신료	번역료	대리인 수수료	합계
EPC*	810+532	1,431	715	16,790	12,600	17,000	49,900
미국	690	-	1,210	2,730	없음	5,700	10,330
일본	210	1,100	850	5,840	없음	8,450	16,450

※ 전형적인 출원, 8개국 회원국

- 현재의 유럽 특허의 비용은 일본 및 미국 특허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다.

특허 출원은 상세한 발명의 명세서와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을 정의한 권리 청구 범위로 구성된다. 현재로, 전형적인 유럽 특허(8개 회원국에 출원)는 약 49,900 유로 정도가 들고, 그 중 12,600(약 25%)이 번역비이다. 모든 15개 회원국에 유럽 특허를 출원하여 모든 11개의 EU 공식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 번역비는 17,000 유로 정도로 올라간다.

공동체 특허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은 이미 특허 허여를 위한 뮌헨 협약에서 협의한 것(이때 특허가 허여되어 EPO의 실무 언어 - 영어, 불어 혹은 독어- 중의 하나로 공개되고 권리 청구 범위가 다른 두 개의 실무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번역은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번역비를 약 2,200 유로로 낮출 것이다. 실제로, 특허의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번역은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 법적 확실성 (legal certainty)

현재로, (유럽 특허를 포함한) 특허 분쟁은 국내 법원에 접수한다. 모든 각 회원국마다 절차가 다르고, 유럽 특허 협약에 규정된 법이 특정 사건에서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15개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침해 및 공동체 특허의 유효성 문제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유럽 법원의 구조 내에 중앙집약적인 공동체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위원회는 제안하였다. 이는 조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간 회의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에서 위원회가 이미 올 3월에 요청한 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한 토론이 공동체 사법 제도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간 회의 내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소의 권리 능력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특허의 침해 및/혹은 유효성에 관한 분쟁에만 한정될 것이다. 특허의 계약 라이센싱 혹은 소유권에 관련된 다른 분쟁은 국내 법원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번 제안은 단일 공동체 특허를 제정하기 위한 30년 동안의 노력에 뒤따른 조치이다. 모든 회원국(스

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사이프러스 포함)이 체약국인 1973년 유럽 특허 협약 회의 기간 동안 뮌헨에 정부간 유럽 특허청 및 특허 허여에 관한 단일 절차가 제정되었다. 1975년 룩셈부르크 협약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더 밀고 나아가 공동체 특허를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완전히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도메인 이름 남용에 관한 새로운 문제 조사 착수

- WIPO -

이번 주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의 악의적 등록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수많은 국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도메인 이름 남용은 다시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전자 상거래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구축하고 반드시 등록된 상표에만 기반을 두지 않은 권리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WIPO는 1999년 12월 이래로 인터넷에서 상표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의 통일 분쟁 해결 정책 (UDRP :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제자리를 잡는데 조력하였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UDRP의 이행하도록 하는 1년간의 연구에서 지재권 문제가 도메인 이름 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지재권 문제를 더 많이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호주를 선두로 한 국가 그룹(아르헨티나, 캐나다, 덴마크, 유럽 연합, 프랑스, 미국)은 Dr. Kamil WIPO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지재권 보호를 증진하고 지재권 및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의의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문제는 상호(trade names), 지리적 표시 및 상표권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른 권리의 남용적 등록을 포함한다. 이번 요구에는 또한 국가 코드 톱-레벨 도메인 (ccTLDs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name registries)의 운영자가 도메인 이름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을 WIPO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첫 WIPO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절차를 감독했던 Mr. Francis Gurry WIPO 사무차장은 이번의 요구를 환영하면서 WIPO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할만한 환경을 증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구는 실제와 가상 세계에서의 확인자들(identifiers) 간에 더 큰 상호 교환성을 갖추려는 WIPO의 시도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였다. 인격권(personality right), 지리적 표시 그리고 요구서에 언급된 다른 권리를 검토하면서, WIPO는 좀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적 정책적 영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Mr. Gurry는 덧붙였다

이번 두 번째 협의의 결과는 2001년 전반기에 WIPO 회원국과 인터넷 공동체에게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IPO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의는 균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WIPO는 지재권 소유자 및 인터넷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전처럼 목적은 언급된 문제에 대한 모든 제3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Mr. Gurry는 말하였다.

두 번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1999년 4월에, WIPO는 일련의 권고안을 담은 "인터넷 이름과 주소의 관리 : 지식재산권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과의 갈등에 야기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년간에 걸쳐서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직접 만나서 벌인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였다. 권고안은 도메인 이름 제도(DNS : domain name system)의 기술적 관리자인 ICANN에 제출되었다. 199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UDRP(통일 분쟁 해결 정책)은 ICANN이 시행한 WIPO 권고안 중의 하나였다. WIPO의 분쟁 해결 제도는 이제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절감적인 방법으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750여 사건이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에 접수되었으며, 올해 초 이래로 345건 이상이 해결되었다.

첫 번째 협의에서는 오직 상표 및 도메인 이름 간의 가장 첨예한 문제만을 목표로 하였으며, 더 이상의 협의가 요구되는 수많은 두드러진 문제를 확인만 하였다. 협의가 요구되는 두드러지는 문제는 상호, 지리적 표시 그리고 등록된 상표에 근거를 두지 않은 다른 권리들은 포함한다.

호주 통신, 정보 기술 및 예술부 장관인 Richard Alston 상원의원과 19개의 다른 회원국이 서명하여 Dr. Idris에게 보낸 2개의 편지에서 WIPO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ccTLDs 관리의 조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 두 편지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악의적, 남용적, 오도적 혹은 불공정한 사용이 있다.

- 개인의 이름 (특징적이거나 유명하기 때문에 남용적인 등록의 목표가 된 개인의 이름);
- 국제 비소유 이름 (INNs :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였고, 세계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의약 물질의 일반적 이름);
- (파리 협약 및 TRIPS 협정에 의하여 상표로 사용 및 등록에서 제외된)국제 국가간 기구 이름;
- 지리적 표시, 지리적 용어 혹은 원천지 표시 (특정 지리적 지역의 생산자에게 그 지방산 제품을 표시하는 권리를 주게 되는 그러한 연계를 나타내는 '산지 상품(place goods)'의 표시);
- 상호 (상표 및 서비스 마크와는 별개로 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기업과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이 채택한 이름).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간에 연계성을 용이하게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사용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확인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사이버 무단 점거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우수한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잠재력을 도메인 이름에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표를 자신들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이고, 시장 지명도를 높이기를 희망한다. 도메인 이름은 이제 인터넷에서 기업의 존재를 표시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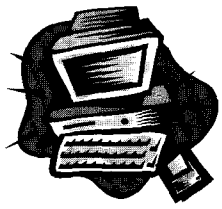

으로서 광고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도메인 이름은 점차적으로 상표권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한 갈등의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상표 등록 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부터 발생한다. 전자 (상표 등록) 제도는 영역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국내 혹은 지역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공공 (정부) 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 반면, 후자 (도메인 이름 등록) 제도는 보통 아무런 기능적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비정부 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지구전체에 걸친 존재를 제공한다.

사이버 무단 점거자는 전 지구적 선착순이라는 도메인 이름 제도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차이를 악용한다. 지재권자와 선의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들은 UDRP를 비용절감적이고 신속한

자동 금융 혹은 관리 데이터 처리 방법(영업방법)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 Autimated Financial or Management Data Processing Methods (Business Methods)

-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

최근에 미 특허상표청 (USPTO), 특히 자동 영업 데이터 처리 기술 (분류기호 705류)의 특허 출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중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2000년 3월 29일, USPTO는 전자 상거래 및 영업 방법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심사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영업방법 특허 발의 : 행동 계획 - Business Methods Patent Initiative: An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0년 6월 29일 USPTO는 컴퓨터 시행 영업 방법 특허 발의(Computer Implemented Business Method Patent Initiatives)에 관한 국민 토론회(roundtable meeting)를 가졌다.

이번 백서에는 영업 데이터 처리의 특허 역사, 이러한 기술의 변천 및 이러한 변천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심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USPTO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원 및 발전 - 영업 데이터 처리는 기계 기술로부터 현재의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자동 영업 데이터 처리 그 자체는 1백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업 방법 청구범위 형태는 그러한 시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양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이에 대한 사용 증가는 지난 세기 동안에 이룩한 진보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705류 (현대 영업 데이터 처리) - 705류는 수많은

소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영업 데이터 처리 기계 및 방법에 관한 소그룹은 4개가 있다. 이러한 기계 및 방법은 여전히 그 바탕에 있는 전기 및 컴퓨터 공학을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다. 705류를 통한 특허 출원은 1999년 USPTO에 출원된 전체의 특허출원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의 원천 -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은 "영업 방법 청구범위"가 특허 보호의 유용한 형태라는 인식을 야기하였다.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서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접근 방식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차례로 705류 발명의 심사에 대한 심사관의 지식 기반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백년 이상 동안 USPTO는 적절히 대응하여 영업 기술의 필요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 기반을 변경시키고 있다.

질적 향상 - USPTO의 특허 심사관들의 높은 질적 심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질적 발의는 계속해서 최신의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2000년 3월 이전에 있었던 발의뿐만 아니라 Q. Todd Dickinson 상무부 지재권 차관이자 USPTO의 청장이 3월에 발표한 질적 발의를 강조하고 있다.

고객과의 동반자관계 - 고객과의 동반자관계는 USPTO가 앞으로의 705류의 필요를 측정하면서 질적 향상에 중요하다. 고객은 앞으로의 영업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을 먼저 알게 될 것이다. 고객은 또한 지식 기반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지원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게 된다.

PCT 세미나 개최 안내

◈ 주　　제 : PCT 관련 출원절차 및 동 제도에 대한 미국, 유럽의 운용사항 등
◈ 개최장소 및 일시
• 서　울
- 일　시 : 2000년 10월 24일(화) 09:00~17:3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양재동)
• 대　전
- 일　시 : 2000년 10월 25일(수) 09:30~17:30
2000년 10월 26일(목) 09:30~12: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
◈ 주　　최 : 특허청(KIP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공동주체[유럽특허청(EPO)협조]
◈ 후　　원 :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 참석대상 : 출원인, 변리사, 업계 관계자, 학계 등
◈ 사용언어 : 영어(동시통역 예정)
※ 참가비 및 설명회 자료 : 무료